

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688-1
----------	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7월 20일

발 의 자 : 박 선 미 의원

1. 수정이유

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에 대한 노력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
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이용자 및 대여 사업사의 무단방치 노력에 관한 사항(조례안 제7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수정조례안 : 덧붙임

나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『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제정안과 같음』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출 안	수 정 안
<p>제7조(무단방치 금지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·보관·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7조(무단방치 금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이용자 및 대여사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